

경제학에서 책임과 공감의 실종 및 그 복원 가능성*

최 정 규[†]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본 연구는 도덕철학의 한 분과학문으로 출발한 경제학이 그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탈윤리적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학설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경제이론에서, 혹은 더 큰 틀에서는 자유주의 내에서 도덕성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살펴볼 것이고, 그러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고려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과정을 추적해보면서, 그것이 왈라스적 패러다임, 즉 완전한 계약 패러다임의 성립과정과 병행되었음을 이야기할 것이다. 완전한 계약이라는 가정이 폐기되는 순간 경제주체의 비도덕성이 문제의 전면에 등장하며, 이는 다시금 경제학에서 도덕적 논의를 복원해낼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것임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학에서 도덕감정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최근의 시도들을 간략히 검토할 것이다.

주제어 : 경제학, 경제인, 책임, 공감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그리고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5391). 이 논문은 2014년 한국인지과학회 추계심포지움 <21세기 한국에서 공감과 책임을 말하다>에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 최정규,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연구 분야: 미시경제학, 제도/진화 경제학
E-mail: jkchoi@knu.ac.kr

들어가며

경제학에 대한 따가운 눈초리가 거세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었던 위기의 여진이 여전히 느껴지는 상황에서, 위기의 근원을 경제이론의 해악 혹은 경제이론의 무능력에서 찾기도 한다. 그 비판의 내용은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제학 혹은 탐욕을 부추기는 경제학 등이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한다. “경제학은 정녕 비윤리적 혹은 탈윤리적 학문인가?”, “만일 경제학이 그런 학문이라면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가?”, “만일 경제학이 원래 그런 학문이 아니었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혹은 왜 그렇게 보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현재의 경제학이 탈윤리적인 학문 혹은 비윤리적인 학문이 되었다면, 경제학을 윤리화시킬 수는 없을까?”.

혹자는 경제학이 과학으로서 정립되기 시작하면서 윤리적인 문제와는 단절되었다고 지적한다. 라이오넬 로빈스(Lionel Robbins)는 그의 책 <An essay on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economic science>에서 사실을 다루는 경제학과 가치와 규범을 다루는 윤리학은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Robbins, 1935, p. 148).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경제학을 사회과학의 여왕으로 자리잡게 만들어준 배경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Hirschman, 1980). 사람들마다 과학이란 것을 어떻게 머리에 그리는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과학의 ‘중립성’이라는 말 속에는 과학이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 윤리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믿음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은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온 근대 과학의 관점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과학 혹은 기술의 중립성이라는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과학과 기술에서도 윤리적 요소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말이 힘을 얻고 있는 시점에서, 하물며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비록 그것이 과학이라고 할지라도)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입을 닫아야 한다는 말은 변호하기 힘들어 보인다. 더 나아가 경제학이 과연 ‘중립성’을 이야기할 정도로 ‘과학’인가, 즉 경제학도 과학과 마찬가지로 실험실 내에서 ‘진공’상태를 만들어 분석할 수 있는 학문인가도 사실 되짚어봐야 하는 문제임을 생각해보면,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 윤리적인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될 수 있다는 주장을 재고해 봐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실제로 경제학에서 윤리 및 도덕적 가치의 문제가 완전히 도외시 되어온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 공정하고 정의로운 배분, 불평등의 문제 등은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졌는지 아니면 주변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경제학에서도 계속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던 논점들이다.

경제학에서 윤리적 문제(그것이 정의에 관련된 문제이든 아니면 경제주체의 도덕적 행위에 관련된 문제이든)를 다루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윤리적 문제는 분배적 정의에 대한 논의에서 발견된다. 이 논제 하에서는 경제 내에서 최종적 생산물이 각 구성원들에게 어떤 원리에 따라 어떻게 분배되어야 ‘바람직한지’를 다룬다. 후생경제학자들은 경쟁시장으로부터 결과된 최종 생산물의 분배 상태(혹은 그로부터 얻어지는 각 구성원들의 후생상태)를 놓고 그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방식의 재분배가 가장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롤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정의로운 분배에 대한 연구들이나, 애로우로부터 시작된 바람직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문제 등이 이 범주에 속하는 논의들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주체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감정 혹은 윤리적 고려 등이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과연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만 행동하는지 아니면 타인에 대한 도덕적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행동도 존재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어떤 상황 하에서 경제주체들이 도덕적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지는지의 여부, 그리고 경제주체들이 도덕적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떠한 사회적 합의를 갖는지의 여부 등이 이 범주에 속하는 주제들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후자의 논의, 즉 개인들의 행위의 도덕성 문제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서 도덕철학의 하위 분과로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에서 경제주체들의 도덕성에 관한 논의가 그 동안 왜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지, 그리고 최근 경제이론에서 재등장한 도덕적 존재로서의 경제주체에 대한 관심이 어떤 맥락에서 중요하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학에서의 도덕(공감과 책임)의 실증 과정은 근대 자유주의의 성립과 떼어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경제학에서 탈윤리적 인간형의 확립과정은 자유주의 사상적 흐름에서 자율적 주체가 등장하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경제학적 개인이 자율적 주체의 구성에 필수적인(혹은 최소한

의) 덕목으로서의 공감 및 책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이론이 완전한 계약이라는 제도적 환경을 전제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경제학에 다시금 도덕을 복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것인데, 이는 역으로 자유주의적 틀 내에서 도덕이 차지하는 지위를 재확보하고, 현대 사회에서 자유주의적 도덕관이 여전히 유용한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자유주의적 인간형으로서 자율적 주체의 등장

자기 이익만을 고려하는 인간형에 대한 요구

통치술과 관련하여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심은 최초에는 통치술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다. 14-16세기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개인’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17-18세기 계몽주의의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에게 닥친 불행은 운이나 숙명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관심이 생겨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마키아벨리, 비코 등의 사상가들이 인간에 대한 상을 제시한 것도 바로 이러한 관심하에서였다. 이들은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통치 대상이 되는 개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들의 눈에 비친 개인들의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통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따라서 제대로된 통치술을 펴기 위해서는 혹은 제대로 된 사회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귀하고 도덕적인 존재들로 이루어진 ‘가상적인’ 사회가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존재들로 이루어진 ‘현실 있는 그대로의’ 사회를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잘 정비된 국가의 삶을 논의하는 모든 자들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었듯이 (그리고 역사는 그러한 사례들로 가득차있다) 국가를 창설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사악하고 따라서 자유로운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나 자신들의 사악한 정신에 따라 행동하려 한다는 점이다. (Machiavelli, *The Discourses*, 1531, p. 84, 쪽번호는 국역본)

이들이 보기에 인간의 본성은 신이 부과한 목표나 목적을 의미하였던 도덕적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인간은 “아무리 한탄스럽다 하더라도, 현실주의 사회정치이론이라면 그리고 현실적 처방이라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줄일 수 없고, 무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이기조차 한 충동과 열정이 일어나는 밑바닥”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였다(Arblaster, 2007, p. 269). 물론 통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해서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인식을 공유했는지를 확실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면 당대의 대부분의 정치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전제해야 극단적인 상황하에서도 작동가능한 제도적 질서를 입안해 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Persky, 1995). 어떤 연유에서든 통치술과 관련하여 자기의 이해만을 배타적으로 고려하는 인간형을 상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근대 정치사상의 큰 줄기 중 하나로 자리잡기 시작했던 것이다.

정치적 저술가들은 정부 시스템을 고안하려 할 때 모든 인간은 정직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행위 목적도 갖지 않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금언처럼 여겨왔다. 바로 이러한 이익을 통해 개인들을 통치해야하고, 이익을 통해 그로 하여금 그칠줄 모르는 탐욕과 야망에도 불구하고 공공선을 위해 협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Hume, “Of the Independency of Parliament” in *Essays, Moral and Political*, 1741)

이러한 과정에서 사라진 것은 시민적 덕성을 배양해내야 할 필요성, 다시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이다. 좋은 시민을 배양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쁜 시민이라도 제대로 행동하도록 만들어주는 통치술을 고안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도만 잘 갖추어진다면 이기심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제도를 잘 갖추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이기심에 가득찬 존재로 전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다음 소절에서 보게되듯이 자기 이익의 추구가말로 근대의 개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줄 동력이 되며,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인들의 사악함을 공공의 이익의 방향으로 전환시켜줄 “숙련된 정치가들의 재간”이었다(Mandeville, 1714). 그러한 의미에서 좋은 물은 좋은 시민의 훌륭한 대체재로 인식되었다.

자율적 개인의 동력으로서의 자기 이익의 추구

관습이나 신의 섭리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된 개인이 자율적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내적 동력이 필요했고, 이에 욕구나 욕망이 그 동력을 제공해준다는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홉스는 당시 자연과학의 발전을 이어받아 원자론에 의거 인간을 묘사하고자 했고, 그로부터 삶 자체는 신체의 움직임이고 신체의 물리적 속성은 일단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다른 것의 방해가 없는 한 관성에 따라 영원히 운동을 해 나가는 것으로 보았다. 그 속에서 이기적인 열정, 욕구, 욕망은 이 운동을 추동시켜내는 내적 동력으로 간주되었다(Hobbes, 1651).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속성이 자율적인 주체의 동력으로 작동한다는 인식은 벤담에게서도 그리고 흄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에게 욕망과 욕구는 자연이 부여한 것이라 인식되었으므로, 근대적 사상에서 전형적이었던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 하에서 욕망은 더 이상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흄과 벤담에게서 좋은 것(즉 스스로에게 유익한 것)은 옳은 것이고 옳은 것이기 위해서는 좋은 것이어야 했기에 욕망하는 주체는 근대적 주체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더 나아가 개인은 무엇을 원하며 무엇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잘 알고 이에 따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 이해되었고, 개인들 각자야말로 자신의 욕구에 대한 믿음만한 판단자로 간주되었다. 이들에게서 욕망은 자율적인 주체를 움직이는 동력임과 동시에 개인을 주권자로 세우는 기초가 되었으며, 자신이 스스로의 욕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계몽된 소수 및 특권자의 온정주의적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Berlin, 1964).

자유주의가 개인주의를 중요한 구성요소로 삼고 있는 이상, 통치술의 관점에서

의 요구이든 아니면 스스로의 추동력을 갖는 원자적이면서도 자율적인 주체를 구성해내기 위한 필요에서든, 자신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개체들을 상징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출발점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사상 내에서 남아 있는 과제는 이렇듯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며 자기 중심적인 원자들의 충돌을 어떻게 완충시켜낼 것인가라는 문제의 해법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스스로 운동력을 확보했으나, 타인과 어울리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개인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구조건이 필요했다. 사회에 대해 개인이 져야하는 의무라는 측면에서, 개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일종의 목적론적인 사슬로부터는 해방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개인들이라면 응답 갖추어야 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타인에 대한 관용이라는 최소한의 도덕적 요구에는 응답할 수 있어야 했다. 그렇다면 내적 추동력을 얻은 자율적 개인들이 타인과 충돌하지 않도록 추동력을 제어해야하는 문제는 자유주의적 토대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홉스적 해법은 리바이어던으로 대표되는 절대권력에 의존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기에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만족할만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상업 사회라는 환경적 요소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욕구 충족을 적절히 제어해줄 주체의 조절 능력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상업사회에서 도덕으로 격상된 이기심, 그리고 조절된 이기심

근대로 접어들면서 중세의 전통 및 종교질서가 무너진 곳에서 개인에 입각한 새로운 질서와 윤리를 확립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상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익 추구라는 관점에서 행해지는 경제활동들이 성장 및 번영의 추동력이 되고 있음을 목격하면서, 이에 대한 도덕적 관점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로 등장했다(Muller, 2002). 예컨대 아담 스미스는 당시 영국에서의 경제성장이 부자 뿐 아니라 가난한 노동자들의 물질적 삶까지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음에 주목했고, 경제적 번영이 물질적 측면 뿐 아니라 여타 사회적, 규범적 측면에서도 당시 영국을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더 진보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아담 스미스, <국부론> 5편 p. 870, 쪽번호는 국역본의 쪽번호임). 시장이, 그리고

그 속에서의 사람들의 이익 추구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킨다는 것을 목도한 당시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윤리관을 재규정함으로써 어떤 차원으로든 개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할 필요가 있었다. 상업 행위, 그리고 금전적 이득 추구 행위는 탐욕과 이익욕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로 오랫동안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근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되기 시작했고, 사익의 추구는 급기야는 존경의 대상으로까지 격상하게 된다. 이제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질문하듯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힘들었던 행위가 어떻게 벤자민 프랭클린이 소명이라 지칭한 행위로 간주되게 되었는가?”(Weber, 1930, p. 35) 라는 질문에 답할 차례이다.

첫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사고로서, 상업사회는 이기심에 기반하지만, 덜 부정한 방식으로 이기심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전시대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관념이 생겼다(Hirschman, 1982; Silver, 1990). 당시 사람들(특히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 직접적 지배에 근거한 중세 봉건 사회나 공정 사회의 경우 아첨하고 속임수를 쓰는 능력이 출세 여부를 좌우했지만, 상업 사회에서는 정직하고 근면하고 유능할수록 성공한다는 점에서, 즉 성공이 본인들의 능력과 노력에 좌지우지 된다는 점에서, 상업 사회가 도덕적으로 덜 부패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Muller, 2002).

둘째, 사적인 이익의 추구라는 열정 일반과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익 추구를 구별하려는 시도들이 진행되었다. 즉 이익 추구 자체는 사회를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열정일 수 있지만 그것이 시장에서 나타날 때에는 이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상업 사회는 가난하고 힘없고, 똑똑하지도 잘나지도 못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부에 대한 본능적 욕망을 보다 온당한 형태로 표출하도록 만든다고 보았다(Smith, <도덕감정론>, p. 119). 스미스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려하게 된다는 점, 즉 서로 협동하는 법을 배우며 자제심을 키워서 좀 더 유연해질 뿐 아니라, 사적 이익의 추구가 비사회적인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절제하고 타인의 요구에 맞춰 행동하는 법을 배워나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미스는 이기적 욕구 일반이 항상 필연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가 단언했던

바는 시장이라는(그가 상업사회라고 부르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 하에서는 이기심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국부론> 4장).

셋째, 자율적 개인은 스스로를 움직일 동력을 획득함과 동시에 그 동력은 사회 속에서 제어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허쉬만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 추구욕(혹은 돈벌이에 대한 관심)은 다른 욕구나 욕정들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Hirschman, 1977). 그에 따르면, 당시 인간의 열정이 갖고 있는 파괴성을 막기 위해서 덜 파괴적이고 덜 유해한 열정으로 다른 파괴적이고 유해한 열정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관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이해관계에 대한 관심은 파괴적인 열정과 무기력한 이성 사이에서 두 극단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양자의 좋은 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즉 이성에 의해 절제되면서도 열정으로부터 추동력을 얻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이전 중세 시대에 권력욕, 색욕과 함께 가장 위험한 3대 열정 중 하나로 간주되었던 소유욕이, 더 나아가 가장 위험한 열정으로 간주되어 왔던 탐욕이나 이익욕이 계산성, 분별력을 갖추으로써 야망, 권력욕, 색욕과 같은 다른 열정에 대항하고 이들을 억제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물질적 이익의 추구는 이해관계(interests)라는 용어를 통해 묘사되기 시작하였고,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여 다른 열정들과 경쟁하고 이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이다(Hirschman, 1977). 이해관계(interests paradigm)에 주목하게 되면서, 부에 대한 침착한 욕구는 탐욕과 분리되고, 침착한 욕망은 계산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규정되면서 이익추구는 합리적인 행위와 동의어로까지 격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물질적, 금전적 욕망은 다른 열정들과 다른 차원의 것으로 인식되면서, 처음에는 열정과 이성 사이에 중간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되다가, 종국적으로는 인간사를 처리하는 데 보다 긍정적이고 치유적인 의미를 갖는 말하자면 이성적인 것으로까지 격상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정치)경제학이 동시에 풀어야했던 과제는 (1) 사적 이익만을 추구해도 도덕적 문제가 생기지 않고; (2) 사적 이익만을 추구해도 전체 복지가 증진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분업이 사회적 총부를 늘리는 기초로 인식되고, 상업이 사회적 분업을

기초로 생산된 생산물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에서, 사적인 이득에 대한 관심 및 추구는 열정의 범주에서 이성의 범주로까지 격상되긴 했으나 아직도 도덕적인 무해함을 스스로 증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덕이란 상업 관계에서의 신의의 문제 혹은 사회적 충부의 증대라는 의미로 대체되어 이해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체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로부터 다소 빗겨나 있기도 했다(박순성, 2003, p. 211). 후자의 문제, 즉 상업을 기반으로 한 근대 사회에서 도덕의 문제를 온전히 다루기 위해, 아담 스미스의 경우 개인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갖춰야 하는 추가적인 덕목들을 강조해야만 했다. 즉 당시 상업 사회에서 요구되었던 새로운 형태의 도덕성, 이른바 절약, 근면, 신중함, 사려깊음, 절제, 용의주도함 등 시민적 덕성들이 개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갖춰야 하는 덕목이라는 형태로 강조되었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 본성 및 자연상태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 홉스의 반대편 흐름에서 있던 컴벌랜드(R. Cumberland), 샤프트버리(A. Ashley-Cooper, 3rd Earl of Shaftesbury), 버틀러(J. Butler) 등의 입장을 계승했지만, 이들과 달리 이기심과 공익의 조화나 개인의 조절된 이기심이 자연이나 신의 섭리의 구현으로서가 아니라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도덕적 원리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Myers, 1983). 아담 스미스는 근대 사회 질서의 기초를 구성하는 원리, 즉 도덕 원리는 개인들의 감정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그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인간의 본성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타인의 기쁨이나 슬픔, 혹은 분노 등을 자신의 마음 속으로 이입함으로써, 스스로의 상상 속에서 타인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껴보고자 하는 능력으로서의 공감(sympathy)과 자신의 감정과 행위를 타인에게 승인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가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 내에서 개인들이 행동하도록 만들어준다고 보았다(Smith, 1759). 도덕감정론에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풀려 나간다. 우선, 나는 타인의 감정과 행위에 관심을 갖고 타인도 나의 감정과 행위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공감의 원리). 그리고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 감정과 행위가 공감되었으면 하고, 더 나아가 내가 타인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도 마찬가지로 타인들에게 공감되었으면 한다(사회적 승인의 원리). 나의 감정과 행위, 그리고 타인의 감정과 행위에 대한 나의 판단이 타인들의 판단과 일치함을 확인할 때 나는 기쁨을 느끼는데, 이를 위해서 나의 판단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즉 공평한 관찰자의 판단과 일치). 요약하자면, 나의 감정과 행동이 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승인된 틀 내에서 표출되도록 해야하고, 타인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나의 판단 역시 사회적으로 승인된 기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담 스미스에게 개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감정을 표출시켜도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본능적인 욕망을 해방시켜도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공평한 관찰자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규칙을 고려하여 행동하는 존재들이었다. 즉 아담 스미스에게 경제적 인간은 자신의 이득을 신중히 추구하면서도 도덕적으로 절제되어 있는 인간이었다.

요약하자면, 자유로운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충돌’의 가능성은 아담 스미스에게서는 개인들의 ‘절제’, ‘동감’ 혹은 ‘정의와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해결된다. 즉 불가피한 행위주체간의 ‘충돌’을 방지하여 자연적 조화를 회복하는 과제는 바로 경제주체의 어깨에 놓여 있었다. 경제주체의 이기적 동기로 환원되지 않고 경제주체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도덕적 감정이야말로 절제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사익 추구 행위가 사회적으로 조정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로 인식되었다.

근대 경제학이 발견한 우회로:

완전한 계약으로 표상되는 시장과 Homo economicus의 등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티아 센 교수는 <윤리학과 경제학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경제학이] 현실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소크라테스적인 질문에서 야기되는 자기 반성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질문은 윌리엄스가 최근 논의한 것처럼 윤리학에서는 출발점이 되는 핵심 문제이다. 경제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과연 이와 같이 끈질기고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실제로 영향을 받지 않고 현대 경

제학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익숙하지 않은 냉정함에 전적으로 충실할 수 있을까? (Sen, 1987, p. 16. 쪽 번호는 번역서의 쪽번호이며, 밑줄은 인용자에 의한 것이다)

같은 책에서 그는 경제학에서 경제주체의 도덕성을 둘러싼 논의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자기이익과 자기이익의 성과에 대한 소위 ‘스미스적’ 관점을 강조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저작에서 이해타산에 덧붙여 ‘동감’을 강조하는 스미스의 태도가 왜 사라지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는가? (Sen, 1987)

센이 지적했듯이 도덕철학의 하위 분과로서 경제학이 등장했던 당시만해도 경제주체가 정의 혹은 윤리적 고려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 천성에는 분명히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가 존재”하며 “이 천성으로 인해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단지 그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행복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에게 연민과 동정심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증명하기 위해 “예를 들 필요조차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한다. (Smith, 1759, p. 27).

분명 아담 스미스(적어도 <도덕감정론>에서의 아담 스미스)까지만 해도 개인들의 자유로운 행위가 어떻게 사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 해결은 부분적으로나마 개인의 도덕성, 즉 개인들의 절제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경제주체가 지녀야 할 도덕성은 경제학 내에서 한 부분을, 그것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이론에서 행위주체는 도덕성을 전혀 요구받지 않는 행위자로서의 경제인 (Homo economicus)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주인공으로부터 윤리적 고려를 완전하게 박탈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살펴볼 차례이다. 그 과정에서 경제이론에서 윤리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언제인지를 역으로 추적해낼 수 있을 것이다.

Homo economicus가 경제이론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부여받는 과정은 경제학에서 ‘완전한 시장’이라는 상이 확립되어가는 과정에 의해 완성되었다. 시장이 완전하다면 한 개인이 최소한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로 기회비용만큼을 지불하게 된다. 이 때 기회비용이란 그 최소한 자원을 다른 누군가가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가치의 크기로 정의된다. 즉 최소한 자원의 사용에 대해 기회비용만큼 가격을 지불한다는 말은 그 자원을 다른 누군가가 사용하여 그로부터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소멸시킨 것에 대해(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한 개인의 행동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 그가 기회비용만큼을 가격으로 지불하면서 상쇄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영향을 그의 일련의 행동에 따른 기회비용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완전한 시장은 행위가 사회에 끼친 영향을 정확히 가격에 반영시키고, 따라서 개인은 그 가격만큼을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그의 행위에는 어떠한 사회적 책임성도 남지 않는다. 즉, 가격은 도덕의 훌륭한 대체물이 된다. 즉 완전한 시장 하에서 개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행위의 효과는 모두 가격화되고, 개인들끼리 주고받는 효과는 ‘거래’된다. 거래에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서로간의 모든 책임을 종결짓듯이 모든 효과가 가격을 통해 대가로 지불되고 나면 어떠한 추가적인 책임성도 들어설 여지가 없는 상태가 된다. 마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나면 더 이상 어떠한 책임도 두 사람 사이에는 남아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근대 사회, 즉 시장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 질서 속에서, 개인들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긍정적/부정적 효과들을 주고받는다. 즉, 개인들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들간의 크고 작은 이해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완전한 시장하에서라면, 자유로운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에서 불가피하게 내재하는 행위 주체간의 이해의 ‘충돌’ 가능성을 해결하는 과제는 더 이상 개인이 부담을 느껴야 하는 도덕감정의 문제가 아니며, 완전한 시장에서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가격을 지불하면서 해결된다. 따라서 여전히 도덕적 충돌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개인들의 도덕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그것을 해결할만큼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완전한 시장은 개인들에게 더 이상 도덕적 감정을 요구하지 않는 제도적 환경

으로 등장한다.

미래 일어날 모든 상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각각의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계약 당시 미리 결정해 놓을 수 있으며, 실제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해진 대로 행동했는지를 제3자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계약을 완전한 계약이라고 한다. 완전한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의 작성, 실행, 그리고 강제에 어떠한 거래비용도 들지 않는다고 해보자.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후생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효과는 사전에 계약에 모두 반영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그러한 행동에도 적절한 가격이 매겨지게 될 것이다. 즉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특정 경제주체가 타인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는, 이것이 사전에 완전히 인지되어 계약에 반영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면, 그에 대한 적정 가격을 매기는 문제로 대체된다. 즉 완전한 계약이라는 전제 하에서라면 가격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효과’를 반영할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놓고 어떠한 추가적인 책임성을 느낄 여지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따라서 완전한 계약의 상황에서라면 Homo economicus를 상정하든, 도덕감정에 충만한 다른 경제주체를 상정하든, 행위의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행동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즉, 경제학이 경제주체들의 어깨에 지워진 도덕적 의무를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완전한 시장, 즉 모든 거래가 완전한 계약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제에 대한 상의 정립이었다. 왈라스로부터 출발하여 애로우와 드브루에서 완성된 ‘경제’의 모습은 완전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영역이었다. 경제학은 완전한 계약의 상황을 전제함으로써 도덕적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절제나 타인에 대한 동감 등이 없어도 자유로운 개인들의 이익 추구가 사회적으로 조정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었다.

사회적 조정 그리고 사회적 질서를 가능케 하는 요인을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의 도덕 감정에서 찾고자 했던 이전의 시도와 달리, 근대 경제학의 답변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완전한 계약이 성립하고, 그로부터 모든 효과가 가격에 반영된다면, 경제적 영역은 ‘윤리’와 ‘정치’의 문제로부터 해방된 도덕적 해방지구로 (Gauthier, 1986), 그 자체로서 완결적인 영역으로 등장하게 된다. 경제라는 공간은 정치 및 민주주의적 요구가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요구는 오직 경제 외부의 정치

적 영역에서만 존재한다는 자유주의적 공/사의 구분이 완성되는 것이다(Bowles and Gintis, 1987).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은 이제 도덕적 주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그것이 완전하다면)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어떻게 부여받는가의 문제는 완전한 계약 하에서 얼마의 가격으로 그 대가를 치를 것인가의 문제로 대체된다. 완전한 계약이라는 상이 성립함과 동시에 경제인(Homo economicus)은 어떠한 도덕성도 갖지 않는 존재가 되었고, 경제학은 아바 레르너(A. Lerner)가 지적하듯이 이미 해결된 정치적 문제만을 다루는 학문이 되었다.

요약하자면 경제학이 택한 우회로는 도덕적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 완결적인 경제적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이곳에서 사적 이익의 추구과정에서 생기는 이해관계의 충돌은 서로 주고받는 효과의 크기만큼 가격을 지불하면서 해결된다. 모든 효과가 가격으로 표현되므로 도덕적 고려는 가격으로 대체된다. 이제 완전한 계약 하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형성된 가격만큼만 지불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계약하에서의 Homo economicus의 모습, 그리고 도덕 감정의 역할

경제학이 경제적 영역에서 도덕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던 것은 위와 같은 의미에서 시장과 계약이 완전하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계약이 당사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효과를 모두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계약이 포괄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할 때마다 완결적인 경제적 영역에는 균열이 생긴다. 그리고 그 균열 마다 경제주체가 상대방을 어떻게 고려하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상대방에게 갈 이득이나 피해를 얼마나 고려하는지를 둘러싸고, 감추어져 있던 행위의 도덕성의 문제가 재등장한다(Pagano, 2000). 문제는 그 균열이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가정하듯 시장의 실패라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계약을 예로 들어보자. 노동시간은 계약이 가능하지만 단위 시간

에 얼마나 많은 노동을 지출할 것인가(즉 노동 강도)는 계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약이 불가능한 사안이 생기면 이 사안을 둘러싼 결정권은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재량하게 놓이게 되는데, 이 때 경제적 영역에 정치적/윤리적 문제가 등장할 여지가 생긴다. 즉 계약이 불완전한 상황하에서는 타인에 대한 고려 혹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가 타인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책임성의 문제가 전면에 대두된다. 이제 Homo economicus에게 익숙치 않은 도덕적 고려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 인용구는 불완전한 계약하에서 Homo economicus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

1970년대의 시작과 함께, 몇몇 선구적인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인(Homo economicus)를 재등장시켰다. 하지만 [중략]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재등장한 경제인이 이전에 알던 그 경제인인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새롭게 등장한 경제인은 더 이상 빅토리아 시대의 젠틀맨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자비롭지도 않았다. 새롭게 등장한 경제인은 시장에서 물건을 고를 때 한계대체율을 계산하는 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도 어떻게 하면 피를 부릴 수 있는지를 고민했고, 거래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도 어떻게 하면 진실을 숨길 수 있을지를 고민했으며, 돈을 갚을 때에도 빌린 돈을 떼어 먹을 때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서 행동했다. (Bowles and Gintis, 1993, p. 84)

완전한 계약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경제인은 올리버 윌리엄슨이 말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의 것을 훔치고, 횡령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데” 능숙한 사람으로 등장한다(Williamson, 1985). 따라서 시장이 완전하다는 가정을 문제삼으면서 80년대 이후 등장한 신제도주의 경제학(특히 기업이론)에서는 기회주의(opportunism) 등으로 표현되는 Homo economicus의 탈윤리성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Williamson, 1975, 1985).

경제학에서는 이에 대한 두 가지 방향의 대응책이 모색되어 왔다. 하나의 방향은 시장이 제대로 문제를 수행하지 못할 때, 국가나 제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흡스적 귀결이다. 여전히 경제주체는 Homo economicus이고, 시장이 완전치 않아 가격 메커니즘 하에서 숨겨졌던 이들의 비도덕성이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이들의 탐욕과 기회주의를 감시하고, 억제하고, 통제해낼 수 있는 잘 짜여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속에서 다시 한번 경제주체의 도덕성의 역할은 무시된다. 마키아벨리가 그랬고 흡이 그랬듯, 사람들을 Homo economicus로 간주하고 만들어진 제도라야 현실의 사람들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해결책, 80년대 경제학의 발전을 이끌었던 신제도주의경제학 등은 모두 이러한 방향 아래서 불완전한 계약과 불완전한 시장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많은 경우 국가적 제도적 개입이 행위 주체들의 비도덕성을 규제함으로써 사적 이해와 공적 이해를 조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이러한 방향의 문제해결이 갖는 한계로는 아래 주장 4를 참고하라), 이 속에서 여전히 사라진 것은 경제주체의 도덕적 행위의 존재 가능성이고, 이를 기초로 한 좋은 시민으로의 지향이다.

다른 하나는 불완전한 계약의 상황이야말로 경제주체의 도덕감정의 존재 및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계약 주체들간의 상호성, 신뢰 등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흐름이다. 사회적 조정의 딜레마 상황에서 외적 제도적 개입없이 비공식적 제도나 자발적인 규범질서의 형성 등을 통해 조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적, 실험적, 사례적 연구들은(Ostrom, 1990, 1998; Bowles, 1998) 한편으로는 경제주체들이 도덕감정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줌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이 불완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불확정의 영역을 어떻게 이용해야하는가에 따라 경제적 성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Akerlof, 1982; Bowles and Gintis, 199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장 3을 참조하라).

이상의 논의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장으로 요약해보자.

주장 1. 불완전 계약은 경제이론에서 개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도덕이 들어설 여지를 만들어준다.

이것이 완전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전제하고 있는 경제이론에서 경제주체의 도덕적 행위가 고려되지 않는 이유가 된다. 완전한 계약 하에서 시장은 ‘도

덕의 해방지구'가 되며, 더 나아가 마르크스가 묘사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벤담의 세계가 된다. 따라서 경제주체의 도덕감정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불완전한 계약의 상황하에서이다. 즉 불완전 계약이라는 문제설정은 경제적 영역에서 행위주체의 도덕성이라는 문제설정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창출해준다.

주장 2. 계약이 완전하지 않다면 개인들의 행동은 '외부성'을 창출한다

행위주체들의 행동이 언제나 계약을 통해 조절, 규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 거기에는 계약이 포괄해내지 못하는 행위의 효과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불완전한 계약하에서 행위주체의 행동에는 필연적으로 가격을 매개로 하지 않은 사회적 성격을 지니는 측면이 존재하게 된다. 즉 불완전한 계약하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외부성'(externality)이라 부르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효과란 결코 경제 활동에서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며, 계약이 불완전한 경우 언제나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이다. 즉 행위의 외부성은 흔히 경제이론에서 예를 들고 있는 공해배출의 문제나 과수원주인과 양봉업자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소비행위나 생산활동의 영역에서 항상 존재하는 주체들간의 상호작용의 본질적인 측면이다. 어떤 주체의 소비행위가 과시적 성격을 가질 때, 그 행위의 효과는 그 행위를 하는 주체의 효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목격하고 있는 다수의 주체들의 후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주체들이 소비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주체들의 소비행위가 중요한 준거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경제적 성과의 결과, 즉 한 집단 내에서 소득 혹은 재화가 구성원들 사이에 어떻게 분포하는가도 개별 경제주체들의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이 공동작업의 성격을 띠게 될 때, 개별 생산자들이 얼마만큼 자발적으로 팀생산에 기여하는가의 여부는 전체 팀의 성과를 좌우하게 되며, 그 결과 타인들의 후생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경제주체들간에 상호작용은 가격경쟁을 매개로 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시장 혹은 가격 메커니즘을 매개하지 않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문제가 될 때, 행위의 사회적 성격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주체들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예외적인 조건에서가 아니라 경제활동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공공영역’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 어떤 행위에 사회적 성격이 강하고, 그 행동이 계약을 통해 조절되지 않는 경우, 그 행위를 둘러싼 불확정적인 영역이 남아 있다면 그 영역은 계약을 통해 어느 누구도 사전적으로 점유하지 못하는 ‘공공영역’이 된다. 즉 계약이 불완전한 경우 외부성은 항상 존재하는 문제이며, 외부성은 ‘공공영역’을 창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공영역이란 시장 외부에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내부에서도(즉 계약관계 내에서도) 그 불완전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배태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공공영역은 경제주체들의 행위의 사회적 성격이 강하고, 그 사회적 성격을 둘러싼 명시적 계약이 불가능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주장 3. 불완전 계약하에서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의 사회적 책임성을 얼마나 인지하는지, 또 상대방에게 행위의 사회적 책임성을 얼마나 강제해낼 수 있는지가 핵심 문제가 된다.

행위의 사회적 성격이 강하고 불완전 계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공영역’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당사자들간의 갈등, 경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간의 관계설정이다. 어떤 행동이 계약에 포괄되지 않아(= 외부성이 존재하여) A의 행동이 ‘거래되지 않고’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A의 행동에 어떻게 책임성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즉 계약을 통해 조절되지 않는 불확정의 사안을 놓고 행위의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의 문제가 부각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성과와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노동과정에서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요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계약이 완전하다면,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력지출 수준을 계약에 따라 강제할 수 있다면, 노동자들의 참여가 생산성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킬 여지는 없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노력지출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계약이 불가능하고, 노동자들의 노력지출 수준은 계약 이후에 사후적으로 결정되며, 또한 그것도 기업주에게는 오직 불완전하게만 확인될 수 있다면 상황은 다르다. 이 경우에는 계약이 포괄하지 못하는 노력지출 수준의 결정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어떻게 푸는가는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자율성이 부여되

는지,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용주가 노동자들의 노력지출을 유도하기 위해 신뢰에 의존하는지 아니면 강제라는 틀에 의존하는지 등의 여부는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Bowles, 2002; Fehr and Gaechter, 1998; Akerlof, 1982).

주장 4. 불완전 계약의 상황에서 계약이 포괄해내지 못하는 부분을 가격이나 좀 더 완전한 제도적 규약으로 채워넣으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 있다.

불완전한 계약의 상황이란 단지 계약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계약에서 노동의 강도를 둘러싼 계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안은 원래 그 사안의 성격상 계약될 수 없다. 또 노동계약에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담는 것도 미래의 불확실성과 경제주체의 제한된 합리성을 감안하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확정적 사안을 둘러싼 “좋은 룰”을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사안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덕성,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의 도덕 감정의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금전적 보상이 헌혈의 참여도를 떨어뜨린다는 보고(Upton, 1973)나 벌금 제도의 도입이 지각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사례(Gneezy and Rustichini, 2000), 그리고 성과급 도입이 자발적 노동지출의 정도를 감소시킨다는 실험연구(Fehr and Gaechter, 2000) 등은 비확정적인 사안을 물질적 유인에 기초한 제도적 개입을 통해 규제하려는 시도가 가져올 실패(즉 제도적 구축효과)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즉 불완전 계약 상황에서 룰은 시민적 덕성을 대체하지 못하며, 룰의 보완을 통해 계약상의 빈틈을 메우려는 시도는 실패할 위험이 있다(제도적 구축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를 리뷰한 논문으로는 Frey and Jegen, 2001, 그리고 제도적 구축효과와 가능성이 있을 때 공공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로는 Bowles and Hwang, 200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사회적 선호

현실에서 경제주체는 자신에게 돌아올 물질적 이득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도덕적 고려를 행하는 존재임은 부정할 수 없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경제주체를 상정했을 때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 최근 윤리적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형태는 소비자들이 소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도덕적 차원을 고려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여러 실험적 연구들도 실험실 내에서의 피실험자들의 행동으로부터 이들의 행동이 이기적 동기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으며, 도덕적 감정이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최근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개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표준적인 경제이론에서 흔히 가정되는 것과 달리 행위 주체는 자신만을 고려하는 선호(self-regarding preferences) 뿐 아니라, 타인을 고려하는 선호(other-regarding preferences), 즉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s)를 갖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사결정의 기초로서의 이타성(altruism), 공정성(fairness), 그리고 상호성(reciprocity) 등의 존재와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었다(Ostrom, 1998; Levine, 1998; Rabin, 1993; Fehr and Schmidt, 1999; Bolton and Ockenfels, 2000; Charness and Rabin, 2002).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물질적(혹은 금전적) 이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이와 동시에 (1) 타인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이득을 희생하기도 하고, (2) 타인의 불공정한 행동이나 규범 이탈 행동에 대해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행동을 처벌하려 하고, (3) 타인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행동에 대해 보답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최후통첩게임이나 공공재 게임 혹은 처벌(혹은 포상)을 가능케 한 공공재 게임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수많은 결과들은 이러한 공정성과 상호성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Guth et al, 1982; Thaler, 1988; Dawes and Thaler, 1988; Fehr and Gaechter 2000).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뇌과학 및 심리학 분야의 연구들과도 긴밀히 연계되면서 학제간 연구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왔다(Fehr and Camerer, 2007; Lee, 2008; Behrens et al., 2009; Fehr, 2009).

개인들이 사회적 선호를 갖는다는 것은 그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둘러싸고 맺어지는 계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의의를 갖는다. 계약이 포괄해내지 못하는 행위의 효과가 존재할 때 각 개인들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행동한다는 것은, 계약의 불완전성을 개개인의 도덕감정을 통해 보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약수를 하고 나서도 해결해야 할 것인 많이 남아 있는 경우, 교환 과정을 둘러싼 제도적 장치가 중요해지고, 경제주체가 이기적 동기를 넘어서 다른 동기를 갖는다는 사실이 경제적 성과에 중요한 함의를 갖게 된다”(Bowles and Gintis, 2000).

요약하자면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선호를 갖고 있다면, (1)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행위의 사회적 성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2) 규범이탈 행위, 혹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보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 행동등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즉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선호는 불완전한 계약이 열어놓은 공공영역에서 행위의 사회적 성격을 적절히 고려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그 영향력을 고려하도록 강제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적 선호에 대한 연구는 최근 행동경제학이 주목을 받으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으로는 실험실의 연구들과 결합하여 이타성, 상호성, 그리고 공정성 등 경제주체의 동기를 밝혀내고, 이러한 동기가 언제 어디서 중요해지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과 결합하고 있으며, 뇌과학이나 의사결정 심리학 분야에서의 연구와 결합하면서 이러한 도덕감정이 발현되는 신경학적 토대를 밝혀주고 있다. 사회적 선호 혹은 도덕감정에 대한 연구는 그 기원을 밝히는 데 있어서나 그것이 발현되는 환경적/제도적 조건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동기가 발현되는 의사결정의 인지과학적/신경과학적 기초를 밝히는 데 있어서 향후 긴밀한 학제간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맺음말

이상의 완전한 계약 하에서 혹은 완전한 시장 하에서는 도덕적 고려가 필요하지 않다는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정의가 개입하는 영역을 이론상으로 확보해내는 문제이다.

도덕적 고려를 필연화하는 것이 계약의 불완전성 이라고 보는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도덕이 개입하는 영역은 ‘절차’의 영역이 된다. 이러한 논의는 후생경제학 제2정리나 롤스적 관점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후생경제학 제2정리란 완전한 시장을 전제한 상태에서 도덕적 고려를 개입시키고자 했던 시도이다. 완전경쟁시장이 전제되면(즉 모든 계약이 완전하다면) 시장의 작동(‘절차’)과 관련해서 윤리적 고려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 때 윤리적 판단이 개입할 마지막 여지는 그것이 초래하는 분배상태에 대한 것일 뿐이다(단 이를 위해서는 외삽된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후생경제학 제2정리의 등장은 완전경쟁시장 가정으로부터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고, 왈라스 패러다임을 유지한 채로 ‘바람직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논의와 비교했을 때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했던 문제는 계약의 불완전성이 열어 놓는 도덕적 영역의 존재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속에서는 계약이 결코 완전해 질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포괄하지 못하는 불확정의 영역을 채워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민주주의’, ‘참여’, ‘책임성’ 등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양 접근은 분명 경제학에서 정의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보완적이다. 분배적 정의론이라고 지칭되는 접근은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을 둘러싼 완전한 계약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정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으며, 불완전 계약론 하에서 부각되는 도덕 감정의 문제는 주체들간의 상호작용에서 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윤리적 측면에 주목할 수 있게 해준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학에서 도덕감정의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는 이론적 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본 논문은 도덕감정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시장/비공식제도/국가 등의 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의 모습을 그리는 데까지는 나아가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상의 구체화는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다루어져야할 내용일 것이다.

로빈슨 크루소라면 행위에 어떠한 도덕적 고려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개인들이 모여사는 사회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개인들은 결코 로빈슨 크루소 일 수 없다. 경제학은 완전한 계약을 가정함으로써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그 영향이 가격화되어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모든 도덕적 책임을 완결짓도록 만들고자 했다. 따라서 불완전한 계약을 긍정하는 것은 행위의 도덕적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음을 긍정하는 것이고, 이 때 개인들의 도덕 감정이 갖는 역할이 전면에 나타난다. 불완전 계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격과 제도(good rule)는 시민적 덕성(good citizen)을 대체하지 못한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여전히 도덕 감정과 시민적 덕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 박순성 (2003), 아담스미스와 자유주의, 풀빛.
- Arblaster, A. (1984), *The Rise and Decline of Western Liberalism* (국역: 조기제 역 (2007), <서구 자유주의의 흥성과 쇠퇴>, 나남).
- Akerlof, G. (1982), "Labor Contract as Partial Gift Exchang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5(2), 543-569.
- Behrens, T. E. J., Hunt, L. T., and Rushworth, M. F. S. (2009), "The Computation of Social Behavior." *Science* 324, 1160-1164.
- Berlin, I. (1964),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 Bolton, G. E. and Ockenfels, A. (2000), "ERC: A theory of equity, reciprocity, and competi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0, 166-193.
- Bowles, S. and Gintis, H. (1987), *Democracy and Capitalism: Property, Community and the Contradictions of Modern Social Thought*, Routledge & Kegan Paul.
- Bowles, S. and Gintis, H. (1990), "Contested Exchange: New Microfoundations for the Political Economy of Capitalism", *Politics & Society*, 18(2), 165-222.
- Bowles, S. and Gintis, G. (1993), "The Revenge of Homo Economicus: Contested Exchange and the revival of Political Econom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7(1), 83-101.

- Bowles, S., and Gintis, G. (2000), "Walrasian Economics in Retrospec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5, 1411-1439.
- Bowles, S. and Hwang, S-H. (2008), "Social Preferences and Public Economics: Mechanism Design When Social Preferences Depend on Incentiv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2, 1811-1820.
- Bowles, S. (2002), *Micro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owles, S. (1998), "Endogenous Preferences: The Cultural Consequences of Markets and Other Economic Institution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6(1), 75-111
- Charness, G. and Rabin, M., 2002, "Understanding Social Preferences with Simple Tes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 817-869.
- Dawes, R. M. and Thaler, R. (1988), "Cooper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3), 187-197.
- Fehr, E. (2009) "Social Preferences and the Brain", in Glimcher et al. (eds.) *Neuroeconomics: Decision Making and the Brain*, Academic Press, 215-232.
- Fehr, Ernst, and Colin F. Camerer. (2007), "Social Neuroeconomics: The Neural Circuitry of Social Preferences."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1.10, 419-427.
- Fehr, E. and Schmidt, K. M. (1999), "A Theory of Fairnes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4, 817-868
- Fehr, E., and Gaechter, S. (2000), "Cooperation and Punishment in Public Goods Experi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90(4), 980-994.
- Fehr, E. and Gaechter, S. (1998), "Reciprocity and Economics: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Homo Reciprocans", *European Economic Review*, 42, 845-859.
- Frey, B. S., and Jegen, R. (2001), "Motivation Crowding Theory", *Journal of Economic Surveys* 15(5), 589-611
- Gauthier, D., (1986), *Morals by Agreement*, Clarendon Press, Oxford.
- Gneezy, U. and Rustichini, A. (2000), "A Fine is a Price", *Journal of Legal Studies*, 29(1), 1-17
- Guth, W., Schmittberger, R., and Schwartz, B. (1982), "An Experimental Analysis of Ultimatum Bargaining",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3, 367-388.

- Hobbes, T. (1651), *Leviathan*.
- Hirschman, A. O. (1977), *Passions and Interest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irschman, A. O. (1980), "Morality and the Social Sciences: A Durable Tension", in J. Adelman ed. (2013), *The Essential Hirschm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irschman, A. O. (1982), "Rival Interpretations of Market Society: Civilizing, Destructive, or Feebl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 1463-1484.
- Hume, D. (1741), "Of the Independency of Parliament" in *Essays, Moral and Political*.
- Lee, D. (2008), "Game Theory and Neural Basis of Social Decision Making", *Nature Neuroscience* 11, 404-409.
- Levine, D. K. (1988), "Modeling Altruism and Spitefulness in Experiments", *Review of Economic Dynamics*, 1, 593-622.
- Mandeville, B. (1714), *The Fable of the Bees: or Private Vices, Public Benefits* (국역: 최윤재 역 (2010), <꿀벌의 우화: 개인의 악덕, 사회의 이익>, 문예출판사)
- Machiavelli, N. (1531), *The Discourses* (국역: 강정인, 안선재 역 (2003), <로마사 논고>, 한길사)
- Muller, J. Z. (2002), *The Mind and the Market: Capitalism in Western Thought*, Anchor (국역: 서찬주, 김청환 역(2006), <자본주의의 매혹: 돈과 시장의 경제사상사>, Human & Books, 2006).
- Myers, M. L. (1983), *The Soul of Modern Economic Ma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strom, E. (1998), "Behavioral Approach to the Rational Choice Theory of Collective Ac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1), 1-22.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국역: 윤홍근, 안도경 역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랜덤하우스)
- Pagano, U. (2000), "Public Markets, Private Orderings and Corporate Governance."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20, 453-477.
- Persky, J. (1995), "Retrospectives: The Ethology of Homo Economicu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2), 221-231.
- Rabin, M. (1993), "Incorporating Fairness into Game Theory and Economics", *American Economic Review*, 83(5), 1281-1302.

- Robbins, L. (1935), *An Essay on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Economic Science*.
- Sen, A. (1987), *On Ethics and Economics*, Blackwell Pub.. (국역: 박순성, 강신욱 역 (1999), <윤리학과 경제학>, 한울 아카데미)
- Silver, A. (1990), “Friendship in Commercial Society: Eighteenth-century Social Theory and Modern Soci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6), 1474-504.
- Smith, A. (1790), *Theory of Moral Sentiments*. 6th Edition (국역: 박세일, 민병국 역 (1996), <도덕감정론>, 비봉출판사)
- Smith, A. (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국역: 김수행 역, <국부론>, 비봉출판사, 2007)
- Thaler, R. (1988), “The Ultimatum Gam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4), 195-206.
- Weber, M. (1930),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Williamson, O. E. (1975), *Markets and Hierarchies: An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Free Press.
- Williamson, O. E. (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ree Press.

1 차원고접수 : 2015. 03. 02
1 차심사완료 : 2015. 03. 20
최종게재승인 : 2015. 03. 20

(Abstract)

Disappearance of Accountability and Sympathy in Economics, and the Possibility of Their Restoration

Jung-Kyoo Choi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istory of economics for answering how the discipline originating from a sub-discipline of moral philosophy ended up being an amoral science. I show that economic theory, at its first stage of development, has retained a place in which morality could play a role within liberalist framework, but has removed the very place as it developed into its current image. I argue that it is the Walrasian paradigm that completed this amoralizing process in economics. One theoretical assumption of complete contract in the Walrasian paradigm, creates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where economic agents are free from any moral consideration. I show that if the assumption is relaxed, the problem of economic agents' morality should reappear in the stage. Accepting the assumption of incomplete contract opens a way to restore the room for economic agents' moral considerations in economic discourses. Finally I briefly survey the recent discussions on the role of sympathy in economics.

Key words : *economics, homo economicus, accountability, sympathy*